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1. . .	
연월일	(제 회)	

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일부개정(‘20.11.19)으로 제28조2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‘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’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28조2항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예비창업자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시행령 제13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 . .)

대통령령 제 호
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법 제28조제2항에서 “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1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표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사·통계 정보
2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등 정책정보
3.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제13조의2(소상공인 제공정보의 범위) 법 제28조제2항에서 “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 1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표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사·통계 정보 2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등 정책정보 3.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3988